

# 맥쿼리 뉴그로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



효력발생예정일 : 2018 년 05 월 23 일

## 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
  - 1) 연금저축과세 내용 업데이트
  - 2) 변동성 수치 및 위험등급 변경 (3 등급-> 2 등급)
  - 3) 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b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	가. 정보 업데이트	-	<b>운용현황 업데이트</b>
10.라.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	이 정보 업데이트	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<u>14.90%</u> 로,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<u>다소 높은 위험</u>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<b><u>15.78%</u></b> 로,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<b>2 등급</b> 에 해당되는 <b>높은 위험</b>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13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정보업데이트	-	<b>업데이트</b>
14. 나.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연금저축과세 내용 업데이트	(세액공제)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이내에서 13.2% 세액공제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	(세액공제) <b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</b> <b>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</b>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(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사유)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	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[2017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
<b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결산 업데이트	재무정보 -	<u>업데이트</u>
<b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정보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
### 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#### 1. 기재 정정 사유

- 1) 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간이투자설명서 전반	정보 업데이트	-	재무정보 등 업데이트